

제204회고령군의의회 제1차 정례회
제1차 본회의 2013.7.10(수) 10:00

『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(안)』

검 토 보 고 서



전 문 위 원

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(안)

1. 제 안 자 : 고령군수

2. 제안이유

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「고령군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의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고령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부지매입

- 위 치 : 고령읍 장기리 128번지 외 3필지
- 면 적 : 토지 2,937㎡
- 기준가격 : 351,219천원(예정가격 : 680,000천원)
- 사 유 : 고령 게이트볼장 조성으로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여가공간, 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함.

4. 관련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

5. 검토의견

- 허임량 전문위원입니다.
- 『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』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- 『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』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, 1건당 취득 및 처분시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, 토지의 건당 면적이 취득의 경우 1,000㎡ 이상, 처분의 경우 2,000㎡ 이상인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음.
- 금번 정례회에 승인 요청한 “고령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부지매입”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- 고령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현재 고령읍 장기리 고령정수장 옆에 위치하여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 이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고령읍 장기리 128번지 외 3필지 2,937㎡의 토지를 예정가격 680,000천원으로 매입하는 것입니다.

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이용하기가 편리한 시설이 되어야 하고,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여가 공간과 도단위 행사 유치 가능성 등 다각적인 면을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이상으로

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